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2007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10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하천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하천점용료 산출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국유지와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 하천법에서 정한 감면 규정은 조례에서 삭제 (안 제3조)
-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가 10%이상 상승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경작목적으로 하천부지 점용시, 점용료 산정기준인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토지가격의 1/100”로 함 ([별표1] 제2호 가목)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동조 제2항에서 ”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 ””을 “동조 제3항 제3호에서 ” 관리청이 정하는 비율 ””로 하고, 동조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부터 제5호를 삭제한다.

1. 재해율이 30~50% 미만의 경우 : 30%
2. 재해율이 50~80% 미만인 경우 : 50%
3. 재해율이 80% 이상인 경우 : 100%

제4조의 단서조항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종 전	개 정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충청북도 <u>하천점용료및사용료</u> 징수조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 ④ (생략) ⑤하천법 제38조 <u>제3항에</u> 의한 변상 금은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충청북도 <u>하천점용료 등</u> 징수조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 ④ (현행과 같음) ⑤하천법 제38조 <u>제4항에</u> 의한 변상 금은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하천법 제 39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하천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며, <u>동 조 제2항에서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 율”</u>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 의 경우 :100% 2.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3.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100% <u>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4. 주민자력에 의하여 마을 공동 이익 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 는 사용하는 경우 : 100% 5.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 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된 때에는 재해율 이 30~50% 미만의 경우에는 30%, 재해율이 50~80% 미만 인 경우에는 50%, 재해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각각 감면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하천법 제 39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하천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며, <u>동조 제3항 제3호에서 “관리청이 정 하는 비율”</u>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율이 30~50% 미만의 경 우 : 30% 2. 재해율이 50~80% 미만인 경 우 : 50% 3. 재해율이 80% 이상인 경우 : 100%

현행	개정안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별표 1]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u>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u>	[별표 1]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u>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100</u>

관계법령 발췌

【하천법】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점용료 등의 감면) 관리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39조 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8.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면
3. 법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국유재산법】

제25조 (사용료)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 2. (생략)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 5. (생략)

② ~ ⑧ (생략)

【지방세법】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절에서 “작물”이라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함은 작물재배법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법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